

가정상담

4

201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통권 416호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법률구조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최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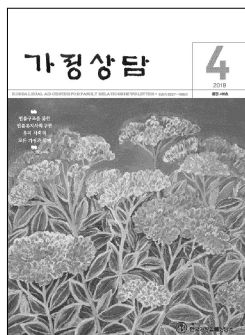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본소는 지난 3월 27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30면)



제45회 “나, 너, 그리고 우리 - 행복찾기 부부캠프”가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재동 데케이서울호텔에서 진행되었다. (관련내용 23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7 통계 ❶

18 • 특별기고 |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❶

23 • 가정폭력상담실

26 • 인터넷 상담

27 • 좋은 책

강간의 역사

28 • 결혼과 인생(182) 영화이야기

아이, 토냐 _ 김용언

30 • 상담소 소식

32 • 지부 소식

34 • 상담통계

35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이혼은 언제라도 하는 사회

.....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 전체의 성찰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상담소의 상담통계는 우리 사회 가정문제의 바로미터입니다. 상담통계와 더불어 상담실에서 체감하는 현실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가정문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일찍부터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 높은 이혼율과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등을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가정문제로 지적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상담소 통계와 통계청의 통계에 나타난 가정문제를 살펴보면 한 동안 증가추세이던 이혼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혼인율과 비례하여 함께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 지표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담소 2017년 상담통계 가운데 이혼상담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높아지는 혼인연령과 연동하여 이혼상담의 경우 3,40대가 가장 높았던 예년에 비해 여성 50대, 남성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령사회의 한 징후로써 노년상담의 가파른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상담통계에서 상담소 이혼상담의 최고령자가 여성 86세, 남성 90세라는 점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 합니다.

이러한 상담통계를 보면서 1998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해로

하시라'는 판결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40여 년간 가부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남편과 어렵고 힘들게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70대 여성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며 제기한 이혼청구를 법원이 '해로하시라'며 기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우리 사회가 여성과 노인에 대해 심하게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해로'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인 상담소를 대표하여 신문 칼럼과 언론의 토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혼 청구의 배경과 기각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70대의 이혼이 세상을 흔들 만큼 큰일이었던 시절이 불과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반향이 커지면서 1999년에 있던 2심 판결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하도록 했고 이후 노년 여성들의 이혼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의 요구가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백세를 바라보는 연령대의 노인들이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정당한 내 몫을 받아 내 삶을 살겠다'며 상담창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란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삶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써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해온 '그 나이에 무슨'이라는 것도 폭력이며 편견일 것입니다. 3,40대의 이혼이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적극적 선택인 것과 마찬가지로 7,8,90대의 이혼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의 한 가지로 당연하게 보아야 합니다.

상담소는 오랜 전부터 이러한 일들을 예견해 왔고 이에 대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조혼인율은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출생을 또한 최저를 경신했다고 하니 사회의 유지와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한 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국가는 기본적인 삶의 대책마련 없이 오직 국가와 사회를 위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라는 요구를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 누구도 자신을 배제한 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혼인하거나 출산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와 사회는 개인이 행복하게 보다 나은 자신의 삶을 위해 혼인하여 출산도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혼한 나이에 도달한 국민 개개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그릇된 관습을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유지와 존속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과제로 던져지고 있으니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가족관계 전문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혼인과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정부와 국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사회의 현실 반영, 노년 이혼 및 성년후견, 유언 상담 증가

- 이혼상담, 여성 50대, 남성 60대 이상 가장 많아
- 고령사회, 노년 이혼 상담 가파르게 증가 (이혼상담 최고령자 여성 86세, 남성 90세)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삶의 질 주장
여성, “내 몫 재산받고 이제라도 정리하고 내 삶 찾겠다”
남성, “나 대접해 주지 않는 아내 필요 없다”
- 혼인생활과 경제력, 경제력 없으면 이혼도 어려워
젊은층은 서로 안 맞으면 돈 상관 없이 이혼하지만
노년층은 경제력 없어 자녀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이혼도 못해

● 여성 최고령자의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여성 86세 / 상대자 남성 91세)

결혼 초부터 남편에게 맞고 살았다. 남편은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였는데 경제권을 쥐고 있어 나는 늘 주눅 들어 살았다. 남편은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해댔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내 몫의 재산을 분할 받고 이혼하려고 했더니 남편과 자녀들 모두 나에게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받는데 자녀들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가?

● 여성 최고령자의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여성 86세 / 상대자 남성 84세)

49년 전 남편과 재혼했다. 나는 사별하고 남편은 이혼한 사람이었다. 사별한 전남편의 재산이 기반이 되어 지금은 20억원 정도의 재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 현재 남편은 거의 돈을 벌지 않았다. 남편의 폭언, 폭행, 무시, 모욕이 심해 헤어지고 마음 편히 살고 싶지만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해올까 걱정이 된다. 고령임에도 남편은 여전히 술을 물 마시듯 마시고 주사가 심하다.

● 남성 최고령자의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남성 90세 / 상대자 여성 78세)

아내가 5년 전 딸이 있는 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명목상은 딸 집에 간 것이지만 아마도 거기에 다른 남자가 있는 듯하다. 아내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젊어서는 그런 대로 순종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아내는 내가 돈 벌이를 하지 못한 다음부터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였고, 다른 남자도 만나고 다녔다. 나도 그런 아내와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이혼하는 방법은?

● 남성 최고령자의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남성 90세 / 상대자 여성 74세)

식당에서 막일을 하던 상대방과 9년 전 재혼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내 재산을 챙겨 가출하였다. 그 후 집에 들어왔으나 또다시 가출을 반복하였다. 아예 들어오지 않은 지는 3년이 지났다. 최근 그런 상대방이 나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는데 결혼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모두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나도 이혼 원하는데 내 재산을 나눠 줘야 하는가?

부부 간 문제도 이혼자체보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전 문제에 대한 고민 더 많아

결국 경제 문제, 삶의 질 문제로 귀결

성년후견 상담 계속 증가

피성년후견인에게 재산이 있을 때
사용, 수익, 처분 문제 발생
관리할 재산 없으면 관심 없어

유언 상속 상담 비중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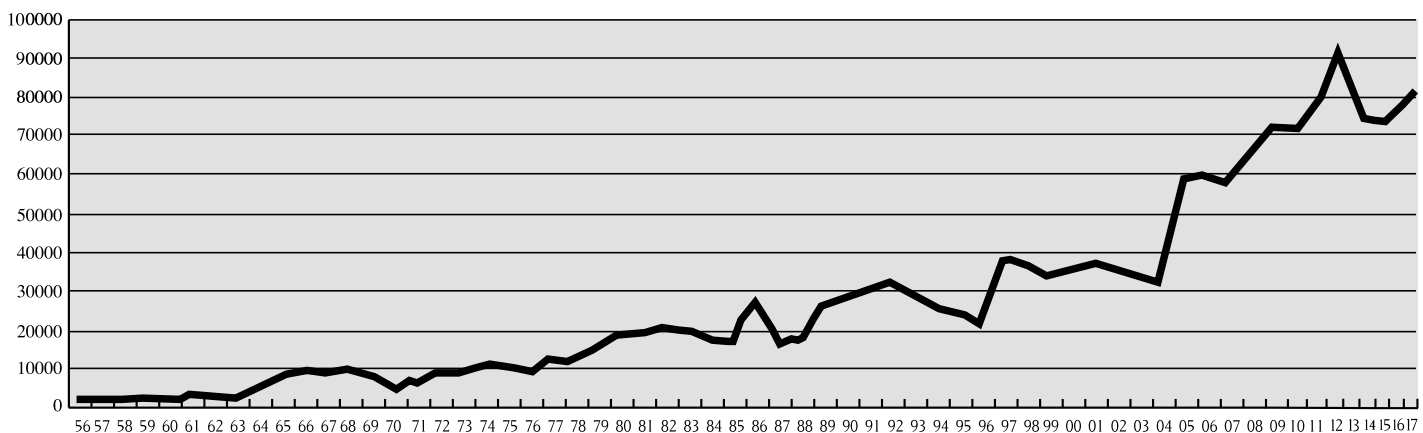
부모 사망 시 한 폰이라도 더 받기 위해
기여도 주장 등으로 형제 간 다툼 발생
부모 빛은 떠안기 싫어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총 147,584건을 상담하였다(본부 총 81,982건, 전국 27개 지부 65,602건).

본부의 2017년도 상담 81,982건(2016년 77,626건)을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75,431건, 화해조정 4,643건, 소장 등 서류작성 1,388건, 소송구조 520건이었다. 한편,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19,818건, 전화상담 58,965건, 통신상담 3,186건, 지상상담 12건, 서신상담 1건이었다.

(건수)

연도별 총 상담건수



면접상담 분석

2017년 본부의 면접상담은 총 19,818건이었다. 사건내용은 크게 가사·민사·형사로 분류하는데, 가사사건이 18,326건으로 면접상담의 92.5%를 차지하였으며, 민사사건이 1,384건(7.0%), 형사사건이 108건(0.5%)이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이혼상담이 26.3%(5,21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부부갈등 18.2%(3,612건), 유언·상속 10.1%(2,007건), 가사기타 7.8%(1,542건), 파산 5.0%(993건), 성년후견 3.8%(761건), 위자료·재산분할 3.8%(748건), 양육비 3.7%(7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상담, 경제 문제와 삶의 질에 대한 고민 많아

이혼상담은 내담자가 이혼의사를 가지고 이혼사유나 절차 등 이혼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상담하는 것으로 면접상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건수와 비율은 감소하였다(2016년 6,969건(31.6%), 2017년 5,215건(26.3%)). 이혼상담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이혼에 대한 욕구 감소보다는 전체 혼인 건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발표 2017년 혼인 건수 26만 4천 5백 건, 전년대비 6.1% 감소).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재산이나 자녀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문의해

오는 경우는 위자료·재산분할, 양육비 등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는데 위자료·재산분할(3.8%), 양육비(3.7%) 관련 상담 비율은 2000년대에 비해 오히려 증가해 이혼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2000년대 위자료·재산분할 2.0%, 양육비 2.1%).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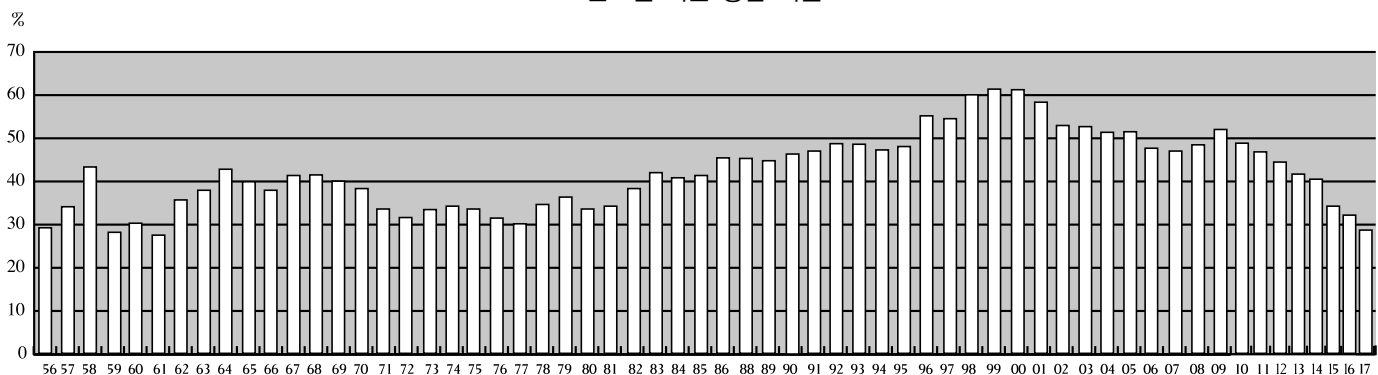
과거에는 이혼 후 겪게 되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되도록 참으면서 이혼 자체에 대해 고민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근래에는 자신의 삶의 질을 고려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이혼에 대한 결단을 빠르게 하고 이혼 후 겪게 될 경제적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져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혼 후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해지고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등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확보되는 등 법, 제도 정비로 이혼 후 경제적 여건이 향상된 것도 이러한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 재산 한 톨이라도 더 받기 위해 유언·상속에 대해 문의

유언·상속에 대한 상담 비율도 10.1%로 2000년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2000년대 유언·상속 2.4%). 유언·

연도별 이혼 상담 비율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통계집「통계로 본 현대 한국 가족의 제문제Ⅲ」 참조.

상속에 대한 문의는 피상속인(망자)의 적극 재산(남긴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경우와 소극 재산(빚)을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경제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자녀들은 부모 사후에 받게 될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였고, 다른 상속인에게 이미 증여가 이뤄진 경우에는 유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해 오기도 하였다. 또한,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갈등과 다툼이 많아지면서 부모 사후에 부양에 대한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부모에게 빚이 많을 경우 부모 사후에 자신이 그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의해 오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이혼 등 다양한 사유로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부, 모 또는 형제 등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후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변제에 대한 부담을 느껴 서둘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였다.

● 유언·상속 상담사례 1

(내담자 40대 남성)

어머니가 1달 전 사망하였다. 나는 6남매 중 막내인데, 어머니가 부동산을 나에게 주겠다는 유언공증을 남겼다. 아직 등기를 하기 전이다.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내담자에게 청구하겠다고 한다. 유언대로 받는 것이 유리할지, 법정상속분대로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알고 싶다.

● 유언·상속 상담사례 2

(내담자 50대 여성)

아버지를 모시던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사망소식도 알려주지 않았다. 다른 친척을 통해 아버

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에게 작은 땅이 있었는데 아마도 상속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서로 갈등이 많아 왕래 안한 지는 오래되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1년내에 신청해야 한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 유언·상속 상담사례 2

(내담자 40대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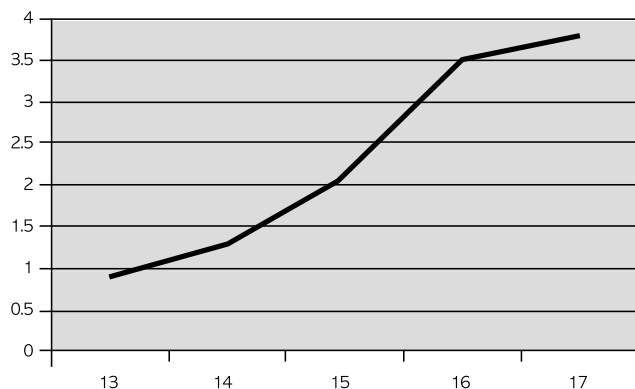
두달 전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는 4남매이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빚이 많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아버지는 오랜 기간 우리와 연락 없이 지냈다. 내가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였다. 내가 한정승인 후 나중에 아버지에게 또 다른 빚이 있다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되는가? 위험 부담이 있다면 나 역시 상속포기를 할까 생각 중이다.

재산 있는 노부모, 형제 등에 대한 성년후견 상담 증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법률행위가 어려운 성년자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 7. 1.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상담도 꾸준히 늘었다. 시행 첫해인 2013년에는 전체 면접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9%(211건)였으나, 2014년에는 1.3%(211건), 2015년에는 2.1%(469건), 2016년에는 3.5%(763건), 2017년에는 3.8%(76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성년후견인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에 대해 일반적으로 포괄적 대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 상담 내용을 보면, 피성년후견인의 의료, 거주, 사회복지서비스 등 신상에 관한 사항보다는 피성년후견인이 이미 소유하거나 사고나 질병에 따른 보험금 등 앞으로 소유하

연도별 성년후견 상담비율



게 될 재산에 대한 관리를 묻는 경우가 더 많았다. 즉, 피성년후견인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 자체에 큰 관심이 없는 반면, 피성년후견인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수익, 처분의 문제 등을 이유로 자녀나 형제 등이 성년후견에 대해 문의해왔고, 서로 자신이 후견인이 되고자 다투는 경우도 있었다.

● 성년후견 상담사례 1

(내담자 70대 여성)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다. 재산은 전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 의사표현을 못하니 만기된 적금조차 찾을 수가 없다. 은행 가서 사정을 이야기해봤지만 본인 아니면 줄 수 없다고 한다. 당장 생활비도 없고 쌓여 가는 병원비도 걱정이 다. 성년후견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 성년후견 상담사례 2

(내담자 40대 남성)

어머니가 치매 초기이다. 그동안 어머니는 혼자 생활했는데 치매 판정을 받은 후 갑자기 형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였다. 나는 좋은 의도인 줄 알았는데 그 때부터

형이 어머니 명의 카드와 통장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 어머니에게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작은 주택에서 월세가 얼마 들어오고 있는데 형이 나쁜 의도로 혹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어머니의 월세가 더 나빠지면 그 때는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된다.

이혼상담

총 5,215건,

여성내담자 3,870건(74.2%),

남성내담자 1,345건(25.8%)

여성은 50대, 남성은 60대 이상,

나이차는 남편 1-2년 연상, 혼인기간은 1-11년,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 남성 직업은 회사원,

남녀 모두 초혼,

남녀 모두 고졸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아

여성은 5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가장 높아

이혼의 경우 여성은 50대(1,077명, 27.8%), 남성은 60대 이상(409명, 30.4%)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 분석을 처음 시작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이혼상담을 한 전체 내담자의 연령을 남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30대(32.7%), 40대(31.9%), 50대(19.0%), 20대(8.3%), 60대 이상(7.9%) 순으로, 남성은 40대(30.4%), 30대(29.5%), 50대(20.0%), 60대 이상(15.8%), 20대(4.2%)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30대, 남성은 40대가 가장 많았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는 남녀 모두 30~40대의 비율이 높았으나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이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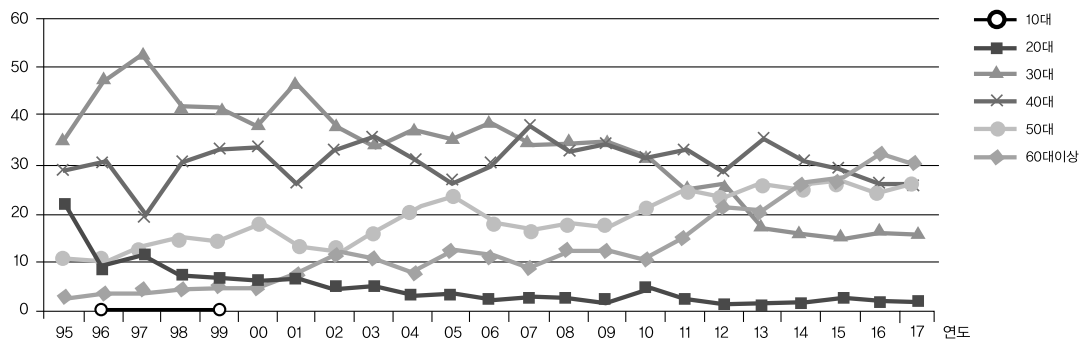
터는 50대가 점차 증가해 2013년에는 남녀 모두 50대가 30대를 제치고 40대 다음으로 2순위를 차지하였다. 이후에도 이혼상담을 하러 오는 내담자의 연령대는 계속 높아져 남성은 2014년과 2015년에 1순위인 40대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2순위를 차지하였고, 2016년부터는 60대 이상이 모든 연령대를 제치고 1순위로 올라섰다. 여성은 2016

년까지 50대가 40대 다음으로 2순위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50대가 1순위로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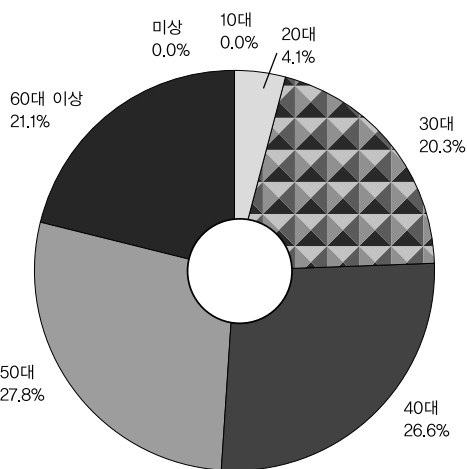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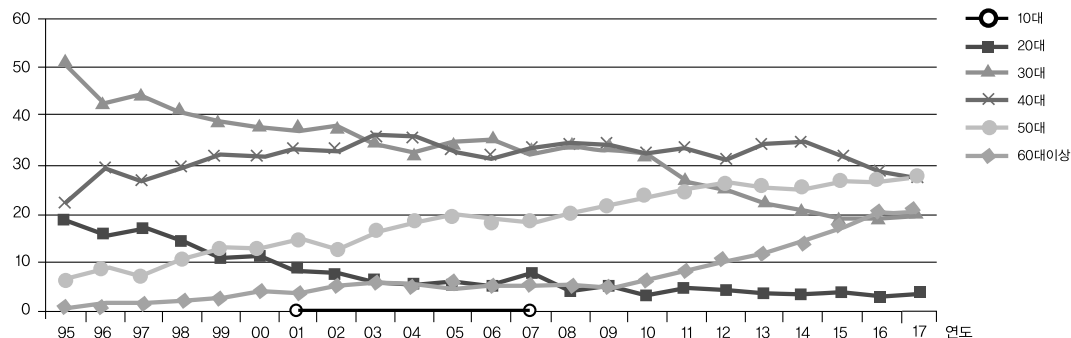
50대~60대의 경우 결혼 초부터 시작된 갈등으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자녀 양육이나 경제 문제 등을 이유로 참다가 자녀가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면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찾겠다며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분할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된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갈등 많은 배우자에게서 벗어나 남은 생은 독립된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진 것도 이혼상담에서 50~60대가 증가한 원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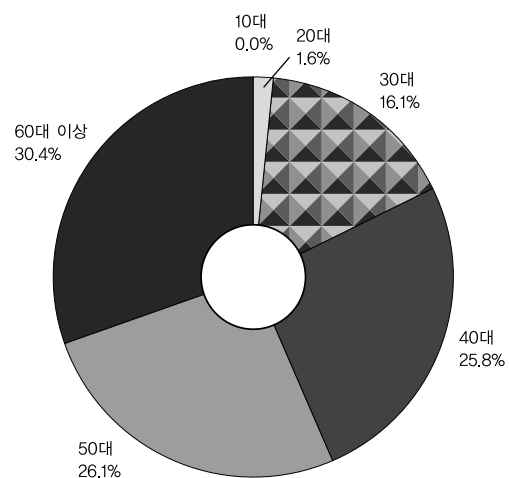
백분율 이혼 - 남성 연령별



백분율 이혼 - 여성 연령별



여성의 연령별 이혼상담 비율



남성의 연령별 이혼상담 비율

이혼상담 사유 분석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3,870건)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생활무능력, 빚, 배우자의 이혼강요 등이 우선 순위임)' (민법 제840조 6호)(45.1%, 1,746건)

2위 '남편의 폭력' (3호)(31.0%, 1,201건)

3위 '남편의 외도' (1호)(13.0%, 503건)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1,345건)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애정상실, 정신병 등이 우선 순위임)' (6호)(57.3%, 77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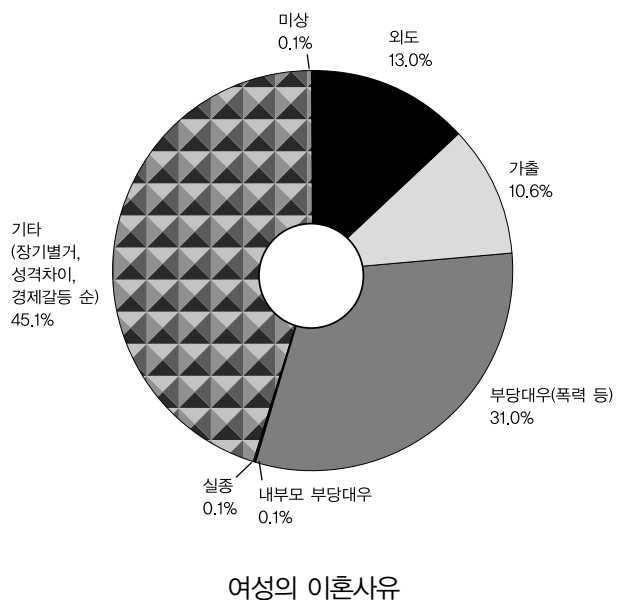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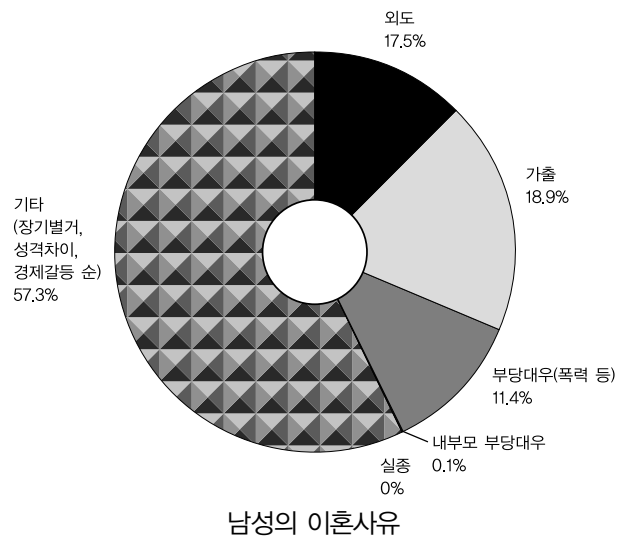
2위 '아내의 가출' (2호)(18.9%, 254건)

3위 '아내의 외도' (1호)(12.3%, 165건)

남녀 모두 1순위를 차지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남녀 모두 1순위로 나타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1,746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19.0%(33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2.4%(217건), '경제갈등' 11.2%(195건), '폭언' 5.4%(94건), '생활무능력' 4.9%(85건), '빚' 3.7%(64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3.6%(6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771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29.2%(22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6.3%(126건), '경제갈등' 6.7%(52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6.1%(47건),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 '애정상실' 각 2.1%(각 16건), '정신병' 1.9%(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가장 많아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가장 많았다 (여성 19.0%, 남성 29.2%). 기타 사유인 6호사유에 '장기별거'라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시킨 것은 1995년부터이다. 첫 해인 1995년에는 6호사유 중 '장기별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 0.1%, 남성 1.2%로 매우 적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10년 후인 2005년에는 여성 13.4%, 남성 7.7%로 나타났다, 다시 10년 후인 2015년에는 6호사유 중 1위인 여성 18.5%, 남성 22.8%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더욱 증가해 여성 19.0%, 남성 29.2%를 기록하였다.

내담자들 중에는 10년 이상 별거가 진행되어 이미 혼인 생활이 형해화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외도나 폭력과 같이 명확하고 뚜렷한 사유와 달리 6호사유는 입증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사유가 많은데 장기별거는 그러한 특징이 더 강했다. 상담을 통해 보면, 처음에는 부부 간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별거를 택하는 경우가 많고 별거 초기에는 자녀 문제 등을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별거가 수년씩 장기화되면 대부분 연락마저 두절되고 별거의 원인이 된 문제는 희미해진 반면, 별거 사실 자체만 남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70대 남성)

75년에 상대방과 혼인하였다. 그런데 혼인 초부터 갈등이 많았다. 결국 10년도 살지 못한 채 서로 따로 살게 되었다. 혼인 초에는 딸이 있어서 그나마도 한번씩 만났는데 딸과 연락이 끊긴 지도 25년이 넘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서류상 부부일 뿐이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과는 한 번 이혼했었고 재결합하였다. 다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똑같은 갈등이 반복되어 6년 정도 함께 살다가 다시 남편과 12년째 별거 중이다. 이혼하고자 하는데, 남편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시댁과도 연락 안한 지 오래되었고, 남편이 아이들과도 연락을 끊어 도무지 남편을 찾을 방법이 없다. 이혼이 가능한가?

남녀 모두 배우자의 이혼강요 주장한 이들 많아

배우자의 이혼강요도 모두 비중있는 사유로 꼽혔다(여성

3.6%, 남성 6.1%). 상담을 통해 보면, 아내는 오랜 시간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아내의 이혼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 와서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들은 이혼 소장을 받는 등 아내의 이혼요구가 구체화 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보고자 하나 이미 정서적으로 이혼상태에 놓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아내는 남편의 이혼요구를 알아도 어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이혼을 망설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럴수록 남편은 폭언과 무시, 냉대, 경제적 압박 등을 일삼고 남편들의 이혼요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여성들도 결국에는 지쳐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혼상담을 해왔다.

● 배우자의 이혼강요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40대 남성)

결혼해서 본가에 들어가 살았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줬다. 그러면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 결국은 안 될 것 같아 분가하였다. 이후에는 장모가 와서 아이들을 돌봐줬는데 그 때부터는 아내와 장모의 갈등이 심해졌다. 결국 장모도 아이들 보는 일을 그만두었다. 아이들도 조금 크고 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뭐든 내 마음대로 한다며 이혼을 요구해왔다.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간 백방으로 애를 썼는데 아내는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내 말을 들으려고도 안한다. 나는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

● 배우자의 이혼강요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30대 여성)

혼인한 지 2년되었다. 그런데 상대방은 특하면 이혼하자며 협박을 한다. 상대방은 혼인 당일에도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며 바로 이혼을 언급하였다. 시부모 또한 우리 부부 사이에 수시로 관여하였고, 시부모 역시 특하면 상

대방에게 이혼하라고 부추기곤 하였다. 상대방과 시어머니의 간섭과 강요로 나는 결혼 후 친구도 만나지 못했다. 사소한 일에도 툭하면 이혼 말이 나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음달이면 아이가 태어나 참고 지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빚 등

빚 많은 경제사정 문제 삼은 여성들 많아

여성의 경우 6호사유 중 ‘경제갈등’ 11.2%(195건), ‘생활무능력’ 4.9%(85건), ‘빚’ 3.7%(64건) 등 어려운 경제사정을 문제 삼아 이혼 상담을 한 경우가 많았다. 자녀수가 감소하고 맞벌이 증가로 가계 수입은 늘었어도 지속되는 불경기와 고용 불안, 주택 문제 등으로 인해 여성들은 경제적 불안을 호소해왔다. 아울러 퇴직이나 사업 실패뿐만 아니라 노부모에 대한 부양문제까지 겹칠 경우 위기감이 가중되어 빚 많은 경제사정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며 이혼상담을 해왔다.

● 경제갈등, 빚 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50대 여성)

상대방과 같이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였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었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돈이 조금 모이자 나태해지기 시작했다. 가게를 더 늘렸는데 결국 수억 원의 빚을 지고 하던 일을 접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상대방과 별거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떨어져 살면서 한번도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 나와 아이들은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더 기대할 것이 없다. 이혼하는 방법은?

●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은 혼인 초부터 예술을 한다고 하며 집을 나가 있

었다. 그러면서 돈도 안 되는 일에만 매달려서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이 거의 없다. 결국 나는 혼자 아이 두 명을 키웠다. 어떻게든 참아왔는데 얼마 전에는 갑자기 시부모 수술비를 대야 한다며 내게 손을 벌렸다. 돈 나올 곳은 없는데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정부의 지원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절차는?

아내의 정신병을 문제 삼은 남성들 많아

남성의 경우 6호사유 중 아내의 ‘정신병’을 문제 삼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0.8%, 2016년 1.1%, 2017년 1.9%). 여성의 경우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산후우울증,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후에는 빈둥지 증후군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출산으로 인해 갑자기 가정에 고립되거나 반대로 자녀 양육과 가사활동만 하다가 자녀 성장으로 갑자기 목표를 상실했을 때 여성들은 불안과 우울을 겪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릴 때 더욱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잦아지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대화마저 끊길 경우 치료 시기를 놓쳐 결국 이혼으로까지 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 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50대 남성)

나는 장애가 있고, 장애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아내는 조현병 환자인데 얼마 되지 않는 연금 등을 모두 교회 헌금으로 내고 밤새 돌아다니거나 교회 및 시가 식구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등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처음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다. 아이를 낳은 후 아내의 태도가 이상해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호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증세가 점점 심해졌다. 더 이상은 함께 지낼 수 없어 이혼하고자 한다.

6호사유 중 비율 증가 항목(2016년 →2017년)

여성			남성		
사유	2016년(%)	2017년(%)	사유	2016년(%)	2017년(%)
불신	0.9	1.2	불신	0.0	0.8
거짓말	0.6	0.8	혼수시비	0.0	0.1
결혼조건속임	0.1	0.3	경제갈등	6.1	6.7
혼수시비	0.0	0.1	사치, 낭비, 허영	0.2	0.9
경제갈등	8.9	11.2	전과, 복역	0.3	0.4
생활무능력	4.6	4.9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1.3	2.1
사치, 낭비, 허영	0.2	0.5	신체적 질병	0.0	0.1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1.3	2.2	정신병	1.1	1.9
성적 갈등	0.2	0.7	의부증	0.7	0.9
의처증	1.5	1.7	무시, 모욕	0.4	0.5
알콜중독	2.2	3.0	애정상실	1.7	2.1
무시, 모욕	1.5	1.7	전혼자녀와의 갈등	0.0	0.1
폭언	4.8	5.4	배우자의 이혼강요	4.3	6.1
기물파손	0.2	0.6	인터넷관련	0.0	0.1
찾은 가출	0.1	0.9	게임중독	0.0	0.1
처가와외의 갈등	0.0	0.1			
배우자의 이혼강요	3.5	3.6			
도박	0.0	0.1			
고부갈등	0.2	0.3			
중독증	0.0	0.5			
자녀양육갈등	0.0	0.1			
가사분담갈등	0.0	0.1			

* 진한 글씨는 남녀 모두 증가한 항목임

● 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남성)

나는 사업을 했었는데 부도가 나면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자 상대방이 그 충격으로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부도난 사업 수습만으로도 버거운데 상대방까지 그러하니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나도 너무 힘이 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딸이 있으나 딸도 손녀 때문에 정신이 없어 상대방을 돌봐주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워 이혼하고자 한다.

노년 이혼상담 비율 가파르게 증가

이혼상담에서 남녀 내담자에 대한 연령별 분석을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이다.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첫 해인 1995년에는 여성 1.2%, 남성 2.8%로 매우 적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10년 후인 2005년에는 여성 5.8%, 남성 12.5%, 다시 10년 후인 2015년에는 여성 18.1%, 남성 27.2%로 나타났고, 2017년에는 더욱 증가해 여성 21.1%, 남성 30.4%를 기록하였다.

2017년도에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소를 방문한 60대 이상 여성은 총 818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630명, 70대는 169명, 80대 이상은 19명이었다. 또한, 60대 이상

남성은 총 409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232명, 70대는 150명, 80대 이상은 27명이었다. 한편, 이혼상담을 받은 내담자 중 최고령자는 남성 90세, 여성 86세였다.

이들이 내세운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순), 3호(남편의 폭력), 2호(남편의 가출) 순, 7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순), 1호(남편의 외도), 3호(남편의 폭력) 순, 80대는 1호(남편의 외도), 6호(기타사유-생활무능력 · 성격차이 · 장기별거 순), 3호(남편의 폭력) 순이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6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배우자의 이혼강요, 성격차이 순), 2호(아내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순, 7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순), 1호(아내의 외도), 2호(아내의 가출) 순, 80대는 6호(기타사유-성격차이, 장기별거, 결혼조건속임 순), 3호(아내의 폭력), 1호(아내의 외도) 순이었다.

80대 이상 여성을 제외하고 남녀 모두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1순위로 6호사유를 제시하였고,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다음 순위로도 대부분 가출이나 외도, 폭력 등을 제시해 연령 구분 없이 분석한 전체 이혼상담 사유와 맥락을 같이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혼인 초부터 있어왔던 문제들은 노년이 되어도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강했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 사회 인식이나 자녀, 경제력 문제 등을 이유로 참고 지냈으나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워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았다.

60대 이상 남녀의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여 성	남 성
1995년	41명(1.2%)	15명(2.8%)
1996년	91명(2.4%)	22명(3.6%)
1997년	96명(2.5%)	25명(4.0%)
1998년	123명(2.7%)	35명(4.6%)
1999년	156명(3.5%)	36명(4.8%)
2000년	237명(4.9%)	41명(5.2%)
2001년	203명(4.5%)	48명(7.7%)
2002년	223명(5.8%)	73명(11.6%)
2003년	212명(6.2%)	60명(10.7%)
2004년	205명(6.2%)	45명(8.4%)
2005년	179명(5.8%)	53명(12.5%)
2006년	211명(6.1%)	60명(11.4%)
2007년	216명(6.0%)	68명(9.0%)
2008년	209명(5.8%)	70명(12.4%)
2009년	213명(5.5%)	79명(12.5%)
2010년	254명(7.0%)	57명(10.5%)
2011년	402명(9.2%)	122명(15.0%)
2012년	521명(11.4%)	175명(21.0%)
2013년	689명(12.4%)	272명(20.1%)
2014년	752명(14.8%)	373명(26.1%)
2015년	996명(18.1%)	524명(27.2%)
2016년	1,038명(20.7%)	626명(31.9%)
2017년	818명(21.1%)	409명(30.4%)

	여성 이혼사유 순위별	남성 이혼사유 순위별
60대	6호(기타-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순)	6호(기타-장기별거, 배우자이혼강요, 성격차이 순)
	3호(남편의 폭력)	2호(아내의 가출)
	2호(남편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70대	6호(기타-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순)	6호(기타-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순)
	1호(남편의 외도)	1호(아내의 외도)
	3호(남편의 폭력)	2호(아내의 가출)
80대 이상	1호(남편의 외도)	6호(기타-성격차이, 장기별거, 결혼조건속임 순)
	6호(기타-장기별거 · 성격차이 · 생활무능력순)	3호(아내의 폭력)
	3호(남편의 폭력)	1호(아내의 외도)

노년 이혼 증가의 배경을 살펴보면, 남녀 공통적으로 기대 수명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지만, 그 외 여성은 소득 활동 기간 연장, 재산분할 및 연금 분할 가능 등 과거에 비해 이혼 후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은 은퇴 후 경제력 감소에 따른 가정 내 지위 하락, 아내와 자녀의 무시, 냉대에 따른 고립감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아울러 별거하거나 한 집에 살면서 정서적 별거 상태에 놓여 가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가장으로서의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진 것도 이유로 보인다.

● 6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60대 남성)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였다. 그런데 퇴직 후 아내의 잔 소리가 너무 너무 심하다. 딸이 38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했다. 아내는 딸이 결혼 안한 원인이 내게 있다며 모든 스트레스를 내게 풀며 포악을 부려댄다. 평생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나도 너무너무 힘이 든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서 이혼하고 싶다.

● 6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여성)

살면서 수도 없이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참고 지냈다. 아이가 대학에 간 후 이혼하려고 했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 결혼이 걱정되었고, 그래서 또 참았다. 결혼까지 시키고 나니 사돈 보기 창피해 또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지겹다. 남편은 여전히 외도와 음주를 일삼고 폭언과 폭행도 한다. 내가 이렇게 사는게 옳은가 회의가 든다. 이제는 이혼하고 내 삶을 살고 싶다.

● 7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70대 남성)

내가 왕년에는 돈을 잘 벌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수입이 변변치 않다. 그러니 아내와 아들, 딸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있다. 아내는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돈을

벌어오라며 몰아세운다. 아들에게 도움을 구했더니 앞으로 도와달라는 말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며 답변을 보내왔다. 이제는 내가 문자를 보내도 답도 하지 않는다. 몇 년 전 모든 재산을 아내 앞으로 바꿨다. 아내는 내가 이혼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는다.

● 7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70대 여성)

남편이 혼인 초부터 계속 외도를 일삼았다. 자신은 그러면서 의처증도 있어 내가 밖에 나가는 것은 매우 싫어한다. 나를 무시하고 돈도 못 쓰게 한다. 나는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고 다른 건강도 많이 안 좋아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고 싶다. 만일 내가 이혼한다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 8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80대 남성)

내가 돈을 벌지 못한 때부터 상대방은 나를 무시했다. 상대방은 내 물건을 모두 가져다 버리거나 밥도 차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목욕할 때 온수를 꺼버리는 등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심지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경찰까지 부른 적이 있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 결국 내가 집을 나오게 되었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청구하고 싶다.

● 8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80대 여성)

남편은 젊어서는 매일 술집에 드나들며 여자들과 놀았고 재산도 많이 탕진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믿고 살 수가 없어 집을 팔고 사며 돈을 벌었다. 남편은 70세가 넘으니 허리에 디스크가 생겨 더 이상은 다른 여성들과 놀러다니지도 못했고 그 때부터 집에 있으면서 나를 괴롭혔다. 결국 지난 달에 크게 다쳤고, 남편이 폭행해 코뼈가 부러졌다. 늙어서까지 맞고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 이혼하고 싶다.

김진영 상담위원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I)

—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2018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2005년 3월 2일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적법과 호적제도 역시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다만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었으므로, 2005년 개정민법 중 호주제 폐지에 관한 부분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었다.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논의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민법개정안 통과 이후에 세 가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¹⁾

당시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할 과

제로 인식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호적제도에 따른 폐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신분등록제도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기존의 호적제도에 따른 폐해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었다. i)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부계혈통 위주로 편제하게 되어 있어서 양성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ii) 개인의 신분사항 및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증명의 목적과 무관한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공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 iii) 호주와 가(家)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는 입적, 복적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복잡한 절차를 발생시킴으로써 호적사무를 번거롭게 만든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주어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었다. i) 우선 양성평등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ii) 증명의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

* 본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이며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호주제 폐지 및 가족법개정 전반에 걸쳐 이론적 논의의 틀을 제공하고 있는 김상용 교수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10년을 맞아 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하였다.

1)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이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법무부안).

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iii) 가족관계등록사무를 합리화하고,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관한 기록사항을 필요한 목적에 따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한다)이 2007년 4월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호적법과 호적제도에 따른 폐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호주와 가(家) 중심의 호적제도와 결별하고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요소는 자연스럽게 제거되었고, 입적, 복적 등의 복잡한 절차도 더 이상 거칠 필요가 없게 되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합리화가 이루어진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증명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현출된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방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 2008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개정 논의가 시작되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기간 이어진 개정 논의는 결국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으로 일단락되었다.²⁾

아래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고, 개정법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앞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II.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배경 - 2008년 시행 당시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족관계등록법은 증명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증명서’라고 한다)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증명서는 구체적인 증명의 목적과 무관한 과도한 신분정보를 일괄적으로 공시하여 신분등록제도 본연의 기능 - 증명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신분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증명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최소화 한다 -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민의 실제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3종의 증명서에서 특히 현저하게 드러났다.

1. 가족관계증명서의 문제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가 일괄적으로 현출되었는데, 자녀로는 현재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뿐만 아니라 전혼 중의 자녀와 혼인외의 자녀도 같이 기재되었다. 따라서, 재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성(姓)과 본(本)이 다른 자녀가 동시에 현출되어(전 남편과 현재의 남편의 성과 본이 다른 경우) 재혼하였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³⁾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의 관계나 특정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굳이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녀까지 현출시킬 필요는 없다(예를 들

2) 2016년 5월 29일 공포(법률 제14169호, 2016년 11월 30일 시행).

3) 또한 양자(일반양자)의 경우 부모로서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동시에 기재되어 양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양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 일반적인 증명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불필요한 정보의 노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입양사실과 친생부모를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려면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써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 A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B의 학비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A와 B 사이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A와 B가 모자관계임을 증명해 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 외에 전혼 중에 출생한 자녀 C가 함께 현출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경우 증명의 필요와 무관한 자녀를 자동적으로 예외 없이 공시하는 것은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불필요한 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구 호적법에 따라 발급되었던 호적등·초본에도 재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전혼 중에 낳은 자녀나 혼인외의 자는 기재되지 않았는데, 새로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러한 민감한 개인 정보가 여과 없이 드러남에 따라 당사자들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새로 도입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초래한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 직후에 개정논의를 촉발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2. 기본증명서의 문제점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등 기본적인 사항의 증명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인데,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당시 발급되었던 기본증명서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일괄적으로 공시하여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개인정보 중 상당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매우 심각했다. 예를 들어, 기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여 생부로부터 인지된 사실, 미성년자였을 때 부모가 이혼하여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된 사실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기본증명서에 일괄적으로 현출되었으며,⁴⁾ 이 중 어느 사항도 제외할 수 없었다.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증명서로서 취업(또는

입학) 시에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과거에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이혼하여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등은 취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인정보로서 취업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증명서에 공시되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공개는 그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있어서 당사자에게 차별과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3. 혼인관계증명서의 문제점

2008년 시행 당시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관계와 배우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혼, 전 배우자, 혼인취소, 혼인무효 등의 기록이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공시되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혼인상태와 배우자를 증명하는 목적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명의 목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과거의 혼인관계까지 공시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었다(예를 들어 A가 직장에서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기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배우자 B와의 혼인관계가 현출되어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과거의 이혼사실과 전 배우자 C까지 공시되어 있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4. 입양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문제점

입양관계증명서는 양친자관계, 친생친자관계 및 입양과 관련된 사항(입양, 파양, 입양의 무효와 취소 등)의 증명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입양은 민법에 의한 입양 중 일반입양이다. 입양관계증명서에도 현재 유효한 입양관계에 관한 사항(양부모, 양자, 입양성립일 등)만

4) 그 외에도 친권·후견, 국적,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성별 전환 등이 기본증명서에 일괄적으로 공시되었다.

이 현출되는 것 아니라 과거의 입양 및 파양, 입양취소의 사실까지 일괄적으로 기재되었으므로, 위에서 본 다른 종류의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가 있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증명의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민법에 의한 입양 중 친양자입양이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 양부모, 친생부모,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친양자 입양 재판 확정일 등)뿐만 아니라 과거의 친양자 입양과 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의 기록사항이 일괄적으로 현출되었다. 다른 종류의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항만이 현출되는 것이 아니라, 친양자입양에 관한 현재와 과거의 모든 기록사항이 일괄적으로 공시되었으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5. 일부사항증명서 제도의 도입과 한계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시행 당시의 가족관계등록법은 5종의 정형화된 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각 증명서에는 개인의 다양한 신분정보가 일괄적으로 현출되어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정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⁵⁾

이러한 배경에서 2009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어⁶⁾ 각종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⁷⁾

일부사항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나 정정이력사항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

성하였으므로, 사생활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부사항증명서는 혼인외의 자녀, 전혼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를 제외하고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2) 그러나 일부사항증명서 제도는 도입 당시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부사항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실제생활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일부사항증명서의 이용률은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았다), 드물게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도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부사항의 증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이른바 ‘전부사항증명서’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사항증명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잘 알지 못했던 일반인들은 일부사항증명서를 필수적인 정보가 제외된 불완전한 증명서로 오해하였으며, 이는 일부사항증명서가 사회에서 외면을 받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부사항증명서 제도로는 과도한 신분정보의 노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인식되면서 다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 논의가 촉발되었다.

III.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

1. 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1) 2014년에 법무부에서 구성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

5) 이미 2008년에 3건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었다(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안, 홍정욱 의원 대표발의안, 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안).

6) 2009년 12월 29일 공포(법률 제9832호, 2011년 12월 30일 시행). 2009년에 국회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각주 12에 소개한 3개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여 법사위가 대안으로 제출한 것이다.

7) 2009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설된 가족관계등록규칙 제21조의2는 일부사항증명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원회에서는 일부사항증명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처음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이하 초안⁸⁾)이라고 한다): i)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5종의 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한다. ii)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외에 상세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이 현출된다. iii) 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기록사항이 현출된다(즉 상세증명서는 당시에 통상적으로 발급되었던 전부사항증명서와 동일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각 증명서 별로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현출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i)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 관한 사항(예를 들어 본인과 자녀 A 또는 본인과 어머니 B 등)이 현출된다. 예를 들어, 갑은 을과 이혼한 후 병과 재혼하였는데,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하여 전혼 중에 출생한 자녀 정과의 친자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자녀 정을 선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일반증명서에는 본인 갑과 자녀 정만이 현출된다). ii) 기본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도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외에 신청인이 선택한 상세증명서의 기록사항이 현출된다(예를 들어 현재의 친권에 관한 사항). 예컨대 미성년자 갑의 친권자 을이 갑의 전학이나 통장개설 등을 위하여 친권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현재의 친권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고, 이 경우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여기서는 갑)

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외에 현재의 친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다. 상세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특별히 증명을 요하는 사항이 없다면(예를 들어 본인의 출생연월일 등만을 증명하면 족한 경우) 일반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면서 추가로 상세증명서의 기록사항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취업이나 입학 시에 기본증명서의 일반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추가로 선택할 사항은 없게 된다. iii)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도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외에 상세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예를 들어 전 배우자 B와의 이혼에 관한 사항)이 현출된다. 예컨대 본인 갑이 직장에서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기 위하여 현재 배우자 을과의 혼인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 이외에 더 이상 추가로 선택할 사항은 없다.⁹⁾

(2) 개정위원회의 초안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i)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되, 일반증명서에는 법 규정에 따라 소정의 기록사항이 현출되며, 일반증명서에 현출될 기록사항을 신청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ii) 상세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되, 그 범위, 내용, 발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계속)

8) 초안의 배경에 대하여는 김상용,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법학논문집』 제38집 제2호(2014) 참조.

9) 이외에 입양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친생부모·양부모(본인이 양자가 된 경우) 또는 양자(본인이 입양을 하여 양부모가 된 경우)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표시되고, 입양 및 파양·입양취소 등에 관한 사항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이 현출된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양부모(본인이 친양자가 된 경우) 또는 친양자(본인이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표시되고, 이외에 친생부모·입양 및 파양 등에 관한 사항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이 표시된다.



‘화목한 부부의 다섯 가지 원리’를 배우고 익히기

- 일 시 : 2018년 3월 24일 ~ 25일
- 장 소 :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
- 참석자 :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탁자 부부 21쌍과 자녀 20명 포함 62명
- 강 사 : 이서원(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부부갈등문제 진단 전문상담가)
이윤정 · 정지혜 · 한은선(미술심리치료전문가)
- 진 행 : 차연실 · 박상진 상담위원,
권지연 선생님 외 자원봉사자 5명

I. 프로그램

1. 첫째 날 저녁강의

(1) OPENING

차연실 상담위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개 및 본소 부부캠프의 취지를 전달한 이후, 이서원 소장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가 선택해서 먹어야지 강제로 하는 것은 마음이 가지 않을 것”이라며 말하면서, 1박2일의 짧은 시간 동안 자유롭게 발언하고 참석하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2)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 우리 부부 어찌다 겨울이 되었을까

1) ‘지금 어디야’

이서원 소장은 상담소에서 상담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였다.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고 젊을 때 힘들게 살았던 한 내담자는 자신의 아들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들이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해주었는데, 어느 날 아들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담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어서 본소에 상담위탁 처분 되었다. 이 사례에서 내담자는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불쌍한 나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부부 사이의 어려움 역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사례 1.

배우자가 99% 틀린 말을 해도 1% 맞는 말에 집중해야

자신의 강압적인 말투와 짜증 때문에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고 말하는 남편과 남편의 분노

조절 실패와 저장강박증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아서 결국 폭력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며 차선택으로 별거를 선택했다는 아내의 사례를 듣고, 이서원 소장은 남편이 아내의 말 중간 중간에 끼어든 점을 주목하면서 평소에도 부부가 대화할 때 이러한 경험이 많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칫하면 중간에 치고 들어온 내용으로 인해 다투느라 정작 하려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99% 틀린 말을 해도 1% 맞는 얘기를 할 때 100% 동의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례 2.

폭력에 대한 민감성은 사람마다 달라

아내의 잔소리에 뺨 한 대 때려서 경찰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정도로 가벼운 문제로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남편과 남편의 잦은 가출과 욕설, 육아에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불만이 쌓였는데 폭력까지 더해지니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아내의 사례를 듣고, 이서원 소장은 손발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입폭력,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는 눈폭력도 폭력이라며 폭력에 대한 민감성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아내는 이번 기회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육아에도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둘째 날 오전강의

(1)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 우리 부부 어쩌다 겨울이 되었을까

1) 화목한 부부의 원리 5가지

이서원 소장은 부부생활은 오래 산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부부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첫째, ‘나도 맞고 너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부이다. 천국에는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이기에 화목한 부부는 예외없이 ‘나도 맞고 너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둘째,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이다. 오래된 습관 하나 바꾸기 힘든데 상대방을 어찌 바꾸겠는가? 화목한 부부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에너지로 상대방의 패턴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당신이 그럴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믿고,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부부이다. 배우자의 성장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된다.

넷째, ‘당신이 나보다 더 힘들다’라고 먼저 생각해보고 이유를 찾아보는 부부이다.

그리고 다섯째,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부부이다. 서로를 불쌍하게 여긴다면 천국이 될 수 있다.

5가지의 특징은 언제든지 시도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인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사례 3.

자녀를 대하는 태도

오줌을 싼다며 때린 아빠를 무서워하는 자녀 때문에 걱정이라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할 수 있을지 궁금한 아내와 훈육의 역할을 아내 대신 본인이 했을 뿐이라는 남편의 사례를 듣고, 이서원 소장은 아이가 오줌을 싼 것은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 ‘실수’라며 실수하는 것은 야단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자녀들과 부딪히는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된다고 설명하였다.

사례 4.

진정한 부부란?

한 아내는 평소에도 자녀들과 자신에게 버럭 화를 내는 남편 때문에 늘 불안한 문제를 토로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서라도 이혼보다는 화해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아내의 사례를 듣고, 이서원 소장은 남편이 화를 낼 때 아내는 역성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남편이 도둑질을 하면 아내는 망을 봐줘야 하는 게 ‘부부’ 라고 말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3. 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

이번 부부캠프에서도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주제 하에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유아 대상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보육과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다양한 신체 및 미술활동을 통해 참석한 유아들로 하여금 안전한 환경에서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내면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아이들 스스로 적절한 이완과 해소를 경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유아반



아동반



청소년반

II. 정리

이번 캠프에서는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따뜻한 봄이지만 우리 부부가 어찌다가 ‘폭력’ 사건으로 인해 추운 겨울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혹독하고 추운 겨울을 지냈지만 우리 부부에게도 다시 따스한 봄날이 올 것을 희망하면서 배우자에게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것, 받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부부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이번 캠프가 참석한 부부들에게 행복해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차연실 상담위원



이번 호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한 위탁아동에 대한 민법상 친양자입양 사건에 관한 사례보고입니다.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을 두고 있던 청구인 부부는 아내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어 부모를 전혀 모른 채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었습니다. 메르스가 유행하자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한 자원봉사자들은 아기들을 한명씩 집으로 데려가 임시양육하기로 하였고, 청구인들도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메르스가 잠잠해져 아이는 다시 시설로 돌아갔지만, 아이를 잊지 못한 청구인들은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아 아이를 집으로 다시 데려와 1년 넘게 양육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애정은 더욱 커졌고, 청구인들은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입양기관에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의뢰하였으나, 입양기관에서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위해서는 아이의 친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의 친부모를 알 수 없고 미성년후견인도 지정되지 않아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가 입양 알선이 아닌 가정위탁을 위하여 시설에 입소되었던 것이고 이미 시설에서 퇴소하였기 때문에,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에 따른 후견인으로서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들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입양

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전제절차인 미성년후견인선임을 위하여 본 상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법률 검토 후 미성년후견인선임 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미성년후견인선임 없이 바로 민법상 친양자입양을 하는 방법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을 민법상 친양자입양한 사례가 없어 이러한 방법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으나, 청구인들,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본 상담소는 본 사안을 시범 케이스로 진행해보기로 하였고, 2017. 2.경 수원지방법원에 친양자 입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후 1년이 지난 2018. 2. 법원은 친양자입양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인양특례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친양자입양을 신청한 사건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보정명령, 사실조회, 가사조사, 심리검사 등을 거쳐 꼼꼼히 심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심문기일에 청구인들의 가족 모두와 상담소 소속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였고, 좋은 결정을 하겠다는 판사의 말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결정을 내린 판사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구인들은 현재 100일 정도 된 아기를 다시 가정위탁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강간의 역사

조르주 비가렐로 지음 이상해 옮김
2002년 도서출판 당대

영구미제로 남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현장보존이라는 기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영망이 된 사건현장에 도착한 형사가 외쳤다.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야?"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대목이다.

그리고 얼마 전 어떤 미국 드라마에서 1960년대 흑인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을 이야기하던 여성 경찰이 시니컬하게 말하던 대목도 참으로 인상 깊었다. 아마도 낙태권이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정된 해를 가리키는 1973년을 언급하는 내용이었다. '1973년까지 강간이란 여성이 변심 했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어요' 드라마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집 주인 백인남성에게 강간을 당하고 신고하러 간 어린 흑인 여성에게 백인남성 경찰은 경찰봉을 쥐어주고 그 앞에는 커피를 마시던 종이컵을 흔들며 안에 경찰봉을 넣어보라고 비아냥거린다. 여성이 거부하면 절대 강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깔깔거리면서 말이다.

미투운동이 사회적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던 어느 날 도서관을 기웃거리다 발견했다. 이 책「강간의 역사」는 프랑스의 사회역사학자 조르주 비가렐로가 쓴 책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여러 세기를 넘나들며 수많은 사례를 통해 강간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양시영 레짐 시대, 강간의 가해자에 대한 상대적 관용과 희생자에 대해서는 수치심이라는 족쇄를 채워 비난하는 역사에서부터 이 책은 시작하고 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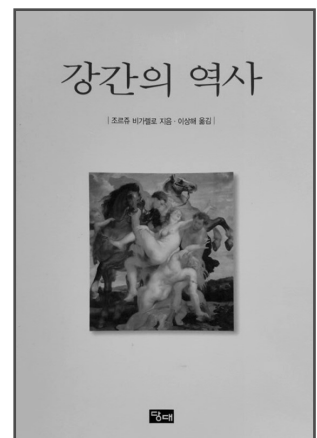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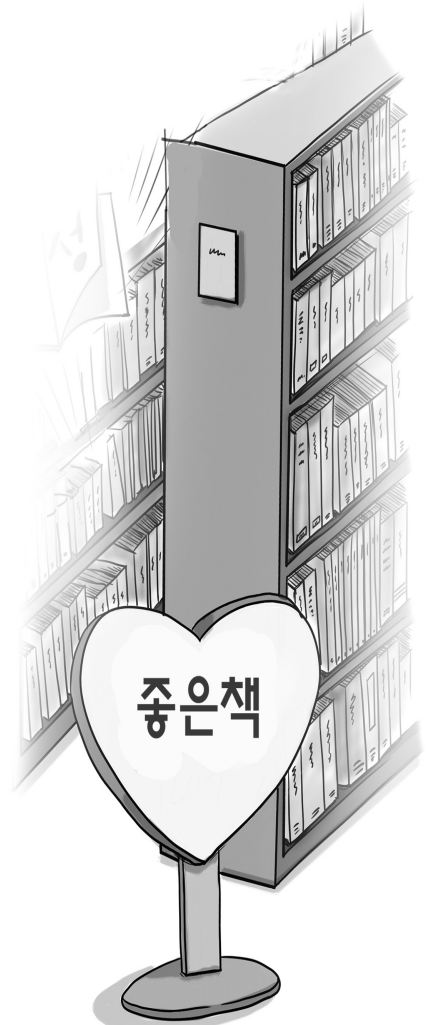
에 대해 조금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피해자도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것을 시대적 정서의 틀로 바라볼 것을 권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성폭력과 그에 대한 심판은 집단적인 하나의 세계 및 그 변화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풀어서 설명하면 "희생자가 어떤 계층에 속하는가에 의해 그 죄의 경중이 가려진다."는 것이다. 또한 그 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 없는 정서도 있다. "도발은 여성의 몫이라는 명제가 팽배해 있는 사회"가 그것이다.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나?' '왜 그런 웃을 입었나?' 같은 피해자에 대해 쉽게 내뱉는 이러한 말들이 그다지 낯설지 않은 것이 비극이다.

저자는 양시영 레짐 시대를 거쳐 18세기 말의 성폭력에 대한 법적 태도와 19세기 강간에서 도덕적 폭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하면서 새로운 법의학의 중요성과 재판과정에 범죄심리학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재판과 소송의 역사는 강간의 역사가 결코 폭력의 역사에 국한되지 않음을 깊이 있게 보여준다. 즉 강간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몸과 그에 대한 인간의 시선과 도덕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듯 기나긴 강간의 역사는 곧 근대적 주체의 탄생과정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남은 의문, 21세기 대한민국은 그 내용면에서 근대인가?

이 숙 현 편집부장



결혼과 인생 (182)



아이, 토냐

감독 레이그 질레스피

출연 마고 로비, 세바스찬 스탠, 앨리스 제니



1992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의 가장 큰 화제는 피겨 스케이터 토냐 하딩을 둘러싼 스캔들이었다. 올림픽 선발 직전,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낸시 캐리건이 괴한에게 린치를 당했고, 그 괴한이 토냐 하딩의 전 남편과 보디가드의 사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든 화살은 토냐 하딩에게 돌아갔다. 하딩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실제적인 배후 조종자일 것이라는 ‘확신’이 순식간에 퍼졌다(이 ‘확신’이 ‘진실’이냐 아니냐의 여부에는 누구도 관심 없었다). 하딩은 모든 의혹을 무릅쓰고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꿈꿨던 금메달 대신 8위라는 성적을 받아들였고, 이후 피겨연맹에서 영구제명 당했다.

〈아이, 토냐〉는 얼음판의 악녀라 불리던 그 사람에 관한 영화다.

‘깡촌’에서 나고 자란 토냐 하딩(마고 로비)은 어린 시절부터 피겨 스케이팅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어머니 라보나(앨리스 제니)는 딸의 스케이팅 교습비를 대기 위해 전업 웨이트리스로 중노동을 감수한다. 아버지는 일찌감치 가족을 떠났다. 이 상황에서 엄마는 딸의 성공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독하게 이를 악물어야 경기를 더 잘해낼 수 있다며 어린 딸을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몰아붙여 분노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데 열중했다. 딸은 엄마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첫사랑 제프(세바스찬 스탠)와 서둘러 결혼식을 올린다.

엄마 덕분에(혹은 엄마 때문에) 오로지 피겨 스케이팅만 하느라 다른 사회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딸은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알지 못한다. 토냐 하딩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불화를 겪었으며, 자신에게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가하는 엄마의 폭력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남자의 폭력과 이어지는 사과와 반복이 얼마나 잘못된 징조인지 알지 못했다. 토냐 하딩은 피겨 스케이팅계라는 좁디 좁은 세계의 기준의 불공평함에 대해, ‘나만 불공평할 수 없고 타인도 당해야 해’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딱히 근본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

다.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는 가정폭력에서 시작된 악순환, 폭력의 본질에 대한 무지는 폭력의 전이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진다. 토냐 하딩의 몰락은 분명 그녀에게 ‘불공평’ 했지만, 그녀 자신이 거기서 전적으로 결백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할 때, 영화가 그에 대해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가지느냐가 판단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이를테면 <아이, 토냐>를 보면서 즉각 연상된 영화는 마틴 스코시즈의 1980년 작 <성난 황소>다. 1940년대 미들급 세계 챔피언 제이크 라모타의 성공과 타락의 여정을 그린 이 영화에서,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라모타는 어디까지나 ‘안티 히어로’다. 그의 인생 경로는 탐미적인 흑백 화면 속에서 추한 아름다움의 강렬한 자극과 함께 유장하게 펼쳐진다. 일종의 그리스식 비극처럼, 인물의 성공이 높을수록 추락의 강도는 더욱 커진다. 그의 추락은 당연한 결과면서도 어딘지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카타르시스와 회한으로 황홀하게 펼쳐진다. 그런데 <아이, 토냐>의 토냐 하딩의 경우는 어떨까?

남성 악당에 대한 영화, 이를테면 지독한 의처증으로 아내를 괴롭혔고 타인과 교류하는 방식이 폭력 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제이크 라모타에 관한 영화는, 폭력이 미국의 주요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라는 분석의 텍스트로 활용된다. 여성 악당에 관한 영화 <아이, 토냐>는 토냐 하딩이라는

인물을 블랙 코미디의 관점에서, 냉소적이면서도 유쾌하게, 그리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감을 유지하면서 그린다. 그리고 개봉 뒤 ‘토냐 하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차이에 대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결국, 토냐 하딩이 실제로 ‘그 일’을 저질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자신을 둘러싼 보수적인 시선에 끊임없이 반항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맞서곤 했던 시한폭탄 같은 여자를 볼 뿐이다.

그 여자는 즉각 매장됐고, 아주 빠른 속도로 잊혔다. 우리는 영화 속 남성 악당의 악행과 비극에 감정이입할 수 있지만, 여성 악당에 대해서는 차단당한다. 이 맹랑하고 통렬한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건 그 때문이다. 그리고 적어도 영화 속의 토냐 하딩 역시, 그녀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피겨 스케이팅으로부터 영원히 차단당한 채, 어머니와 전남편 모두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대상으로 착취당한 채, 그렇게 살아갔다.

물론 그녀는 살아남았다. 아주 잠깐 자신에게 열광했고 그다음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멸시하고 증오했던 세상의 시선 앞에서 고개를 쳐든 채 살아남았다. 폭력의 피해자이자 어찌면 가해자로서, 그리고 결국엔 모두가 미워하고 숨기고 싶어 하는 미국 사회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살아남았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상·담·소·소·식

2018년도 정기총회

본소는 지난 3월 27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차명희 이사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총회는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씀, 전회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안건, 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으며, 모든 안건에 대해 참석한 회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관련사진 2번)

직원 및 자원봉사자 재교육

‘고통에 대한 오해와 대안’을 주제로,
직원들의 문화적 충전과 인문학적 소양 키워

3월 21일 본소 대강의실에서 ‘정재현 교수 초청 특강 - 고통에 대한 오해와 대안 : 종교철학적 성찰을 통하여’를 주제로 직원 재교육이 있었다. 본소에서는 직원들의 전문적 역량 확대와 문화적 충전 및 상담자로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직원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직원과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통’을 주제로 깊이 있는 강의가 이루어졌다. 강사는 ‘왜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여 고통은 그것을 겪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고통에 대한 오해가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므로 이러한 오해를 풀어냄으로써 고통을 극복할 삶의 지혜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강사는 ‘고통을 왜 당하는가?’의 질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가?’, ‘누가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하였고 고통 받는 타자와의 상관적 연대로서 대상(對象)에서 상대(相對)로,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가 홀로서기와 더불어 함께 걸어야 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강사인 정재현 교수는 미국 에모리대학교 종교철학박사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에는 ‘티끌만도 못한 주제에’,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등이 있다.

본소에서 2018년 제1차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권역회의 열려



3월 1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본소 8층 A강의실에서 2018년 제1차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권역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서울의 12개 가정폭력상담소장이 참석하였다.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를 설립하고 초대 상임대표를 맡았던 본소 객배희 소장은 회의에 참석한 소장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정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인사말을 하였다. 인사말에 이어 서울권역대표(제오복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가 진행한 회의에서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임원회의 결과, 2018년도 사업계획, 성폭력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성명 관련, UN CEDAW의 권고안에 대한 논의 등을 하였다.

이레상담교육원 관계자들 본소 방문

3월 14일 이레상담교육원의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 교육생 및 직원들(13명)이 본소를 방문하여 상담소의 법률 구조사업 및 가족법개정사와 관련한 영상 시청과 상담소 사진 전시실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가정 폭력 관련 이혼 소송 관련 판례 동향에 대한 강의(조은경 상담위원)를 듣고, 본소의 법률 구조 사업 및 기관 연계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법률구조 사례와 소송 구조 절차 및 대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교육부, 김병후 원장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3월 22일,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 김병후신경정신과)의 “감정이란?”을 주제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있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총 6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뇌 과학에서 바라본 감정의 의미, 정서와 느낌의 차이, 감정 갈등을 겪는 임상사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내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알리고 노력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 강의는 오는 4월 26일 “인간 뇌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 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 3.8. 여성가족전문상담-과천시여성비전센터
- 조은경 상담위원
- 3.23. 가정보호·아동보호 재판실무 법관연수
- 박소현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박소연,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문득현, 김동규 법무관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3월 13일 차연실 상담위원과 함께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권역회의에 참석하였으며, 16일과 21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다. 23일에는 사법연수원의 「가정보호·아동보호 재판실무」 법관연수에서 “가정폭력처벌법상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실제”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곽배희 소장, 법무부 인권국장 등과 환담

곽배희 소장은 3월 12일 본소를 방문한 한-베 함께돌봄센터 김이연심 소장 등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관련업무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3일에는 본소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권역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했다. 16일에는 법무부 황의석 인권국장과 오유진 인권정책과장 등이 본소를 방문한 가운데 법률구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하는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 이 자리에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배석하였다. 23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했으며, 27일에는 YWCA의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했다.



● ● ● 고 맵 습 니 다

2018년 3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휘,
유문숙, 이병주, 한정희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서암, 김태주, 박소영, 박수열, 박효선,
송명호, 신수경, 윤원섭, 이지원, 이혜민, 이효재,
홍수아, 황미옥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이진철 재판연구관 님, 김미옥, 김소이, 김윤미,
김진아, 이승주,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임채룡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김하영, 김현서, 남서연, 민지은, 박소연, 박정현,
박지수, 박현조, 배소희, 손지희, 이수현, 차시운,
최슬지, 최희원, 한 솔, 함채은, 한정우, 김도영,
김소희A, 김소희B, 김유진, 남서연, 박혜린, 백효진,
유지은, 전희재, 정민지, 채서현, 최승은, 허호재 님

후 원

• 일반회원이 되신 분

권지연, 이민정, 최금녀, 최은아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장철환,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지·부·소·식

강릉지부

3월 4일~18일 강릉올림픽파크에서 2018 평창동계패럴
림픽 임시상담소 운영 및 상담원 파견근무를 실시하였다.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젠더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
고, 2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협의이혼 부부대상 자녀양육교육을 실시하였다.

구리지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을 4회 실시하였다. 3월 8일 구
리역 광장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캠페인을 실시하였
다. 이경숙, 장경아, 김효경, 황은하,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
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3월 15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부모양육안내 교
육을 실시하였다. 27일 군산지청 형사조정 위촉식에 참석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
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6회, 광주시법원 4회 실시하
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4회 실시하였다. 성남
시정보문화센터, 성남중앙도서관, 관내 동주민센터 등에
상담소 홍보물을 12회 배포하였다. 이혜민, 임상준, 임재훈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송도지부

3월 6일 인천 연수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1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송도지부 부설 송도가족상담소 업무를 시작하였다. 23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박진호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3월 23일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26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정원진, 최효재, 김진영, 전태우, 강은혜, 박진우, 허정택, 홍성민, 박진호, 김소이, 김춘희, 구민혜, 최지희, 박지현, 김선철, 이정호, 박지훈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매주 화요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교육을 4회 실시하였다. 20일, 23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가사상담위원, 가사조정위원 위촉식에 참석하였다.

울산지부

3월 19일 정기총회와 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15대 소장으로 정민자 울산대 교수를 선출하였고, 부소장으로 최인숙, 이홍숙, 전해경, 양외금, 노현미 이사를 선임하였다. 감사로 김영성, 황동호 이사가 선임되었고, 총무이사로 윤경원 이사가 선임되었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을 3회 실시하였다. 3월 28일 전주지부 개소 30주년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 결성 및 회의를 실시하였다. 정아람, 김한빛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수탁 받은 가정폭력가해자 14명을 대상으로 '좋은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3월 19일 종사자 및 외부상담위원 등 9명 대상으로 '상담소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수경, 이재경, 김창건, 박진석, 이동건, 홍지혜, 임유정, 정형준, 이영주, 황은하, 여지은, 박수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3월 16일 부설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소송지원 관련 사례회의(류기정 변호사)를 실시하였다. 24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강은실, 홍강오, 백경석, 민태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2월 26일 충북도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 2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8년 2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127건으로 본부가 7,350건, 지부가 4,777건이었다. 본부는 6,760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491건·소장 등 서류작성 76건·소송구조 23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3,944건·화해조정 753건·소장 등 서류작성 19건·소송구조 61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760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8년 1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1.9%→2.0%), 이혼(17.7%→21.0%), 위자료·재산분할(9.0%→9.9%), 양육비(6.4%→8.1%), 면접교섭권(2.6%→2.7%), 친생부인(0.9%→1.2%), 친생자존부(1.9%→2.1%), 입양(1.1%→1.5%), 파혼(0.2%→0.4%), 혼인무효·취소(0.4%→0.6%), 부양(1.0%→1.2%), 유언·상속(5.5%→7.0%), 가족관계등록부(2.1%→2.9%), 친양자(0.4%→0.7%), 개명(0.6%→0.7%), 성변경(0.8%→0.9%), 파양(0.1%→0.2%),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개인회생(0.3%→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760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31건(13.8%), 전화상담 5,551건(82.1%), 통신 및 인터넷상담 277건(4.1%), 자상상담 1건(0.0%)이었다

2018년 3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7,060			
법률상담 (6,298)			
면접	전화	통신	자상
1,203	4,832	262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613	100	49	

* 2018/3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70,612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7,350	931	5,551	277		자상 1	6,760	491	76	23
강릉 (033) 652-9555	54	32	19				51			3
구리·남양주 (031) 551-9976	341	44	93	1			138	201		2
군산 (063) 442-1560	179	88	33				121	57		1
대구 (053) 745-4501	499	155	33	1		출장 140	329	155		15
대전 (042) 520-5258	167	29	132				161		6	
동해 (033) 535-0188	68	16	52				68			
목포 (061) 273-2514	127		125				125			2
부산 (032) 667-2314	294	64	154				218	75		1
성남 (031) 707-6661	244	103	69	2		출장 18	192	47	1	4
송도 (032) 834-1369	115	28	46				74	41		
수원 (031) 243-4600	332	116	98	5		출장 39	258	72	1	1
순천 (061) 753-9910	156	51	101				152	4		
안동 (054) 856-4200	84	10	64				74	9		1
익산 (063) 851-5113	196	42	152	2			196			
인천 (032) 865-1120	258	130	108				238	5	1	14
전주 (063) 244-2930	206	71	114	7	10		202			4
정읍 (063) 535-3705	91	22	49				71	20		
제천 (043) 644-5690	121	37	75				112			9
충구 (02) 2238-6554	154	124	30				154			
진주 (055) 746-7975	120	27	66				93	27		
창원·마산 (055) 261-0280	255	116	119				235	16		4
청주 (043) 257-0088	137	48	81				129	2	6	
춘천 (033) 257-4688	300	56	19			출장 225	300			
태백 (033) 554-4004	112	89	23				112			
평택·안성 (031) 611-4251	113	35	30			출장 22	87	22	4	
포항 (054) 283-7555	54	2	52				54			
지부총상담	4,777	1,535	1,937	18	10	출장 444	3,944	753	19	61
총 상담	12,127	2,466	7,488	295	10	출장 444 자상 1	10,704	1,244	95	84

** 2018/2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54,479건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거짓말로 아내와 장모로부터 돈을 편취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335

담당 : 이강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26세)와 피고(남, 25세)는 2015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3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이후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 피고는 원고를 속여 1,2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빌린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임의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교통사고 처리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원고의 어머니에게 150만원을 받아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결혼 이후 자주 집을 나갔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울산지방법원 2017. 12.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70만 원

을,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7. 12. 1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30만 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경제갈등과 남편의 폭언 등으로 고통 받던 아내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547

담당 : 권오용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59세)와 피고(남, 59세)는 1982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에 이른 형제를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타이완 국적자였으나 2017년 10월경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혼인 후 원고가 가정경제를 관리하였는데, 수입이 적어 저축은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런 사정은 알아주지 않고 원고에게 가정경제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며 비난하여 부부간 갈등을 겪었다. 2015년 10월경 피고는 원고의 조카에게 운영하던 가게를 양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이 생각한 조건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가게를 양도하게 되자,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화를 내며 불만을 표시하면서 폭언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18. 1.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8,741,49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혼인의 자녀의 무책임한 부에 대해 인지 및 양육비 등 판결

법률구조 2017-126

담당 : 김진화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등

내용 : 원고(여, 23세)와 피고(남, 23세)는 고등학교 재학 중 만나 교제하다가 서로 사는 곳이 멀어 헤어지게 되었다. 2015년경 다시 만나게 된 원고와 피고는 그해 여름부터 피고의 자취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원고는 2016년 2월경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피고는 2016년 9월경 외국으로 나가 1년 동안 지내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10월경 임신 8개월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임신으로 인해 본인이 외국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면서 원고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원고는 외국에 있는 피고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피고와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아이를 낳으면 입양을 보내기 위해 입양기관을 알아보고 있었다. 2016년 12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아버지 없이 자라온 가정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낳아 같이 기르자고 하였다. 피고의 말을 믿고 원고는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미혼모 시설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양육을 하였다. 미혼모 시설에서 퇴소를 한 원고는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느라 외국에 있는 피고에게 연락을 잘 하지 못하였는데, 외국에 있던 피고는 자신에게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줄 마음도 없고, 사건본인을 데리고 자신의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을 안정된 상태에서 양육하고자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17. 9. 28.)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9.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가. 피고는 사건본인과 월 1회 당일로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 장소, 방법을 협의하여 정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양육에 비협조적인 공동친권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오던 모에게 단독친권자로 변경 판결

법률구조 2017-142

담당 : 박효선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의 변경

내용 : 베트남인이었던 청구인(여, 34세)은 상대방(남, 64세)과 2005년 5월 혼인하였고, 2009년 9월 국적을 취득하였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2세, 여 11세)을 두었으나 2013년 1월 협의 이혼하였다. 협의 이혼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양육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일이 생길 때마다 공동친권자인 상대방과 함께 방문해야 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에 부딪혔다. 하지만 상대방은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하기 전에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등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위협에 연락도 잘 취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오다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7. 10. 16.)

1.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278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3세)은 제조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다. 배우자는 회사의 권유로 봉재 하청공장을 운영하였지만 공장에 도둑이 들어 갖가지 원단과 옷을 훔쳐가는 바람에 막대한 물품손실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직원들 월급과 물품대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신청인 부부는 빚을 지기 시작하였고 사채까지 이용하면서 어떻게든 운영해보려 하였으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폐업하였다. 폐업 후 2007년경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일용근로를, 배우자는 과일노점상을 시작하였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급급하였고 채무변제는 꿈도 꾸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신청인은 소득이 적고 불규칙적이며 신병으로 앓으면서 식당일을 그만 둔 상황이다. 이처럼 신청인이 현재 생활상황상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1. 26.)

채무자를 면책한다.

**친척의 사기로 채무를 떠안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280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2세)은 1969년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건설직 일용근로를 하며 가정을 유지하였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신청인 부부는 열심히 노력하여 자녀들의 교육을 끝까지 책임졌다. 하지만 2000년경부터 신청인은 계속된 막노동으로 허리디스크를 앓기 시작하였고, 배우자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기 시작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신용카드를 통해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던 중 친척동생이 음식점 사업을 제안하여 대출을 받아 식당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건넸다. 그러나 며칠 뒤 친척동생이 보증금을 갖고 잠적을 하면서 음식점은 개업도 해보지 못하고 신청인은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신청인은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으로 취직하여 소득활동을 하였지만 적은 월급에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또한 이마저도 고령으로 인해 권고사직 하였고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신청인은 현재 자녀의 임대주택에서 무상거주 하고 있는데, 자녀 또한 소득이 적은 일용근로를 하고 있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친척의 사기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1. 12.)

채무자를 면책한다.

**상대방의 동거녀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판결**

법률구조 2017-311

담당 : 옥치돈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등

내용 : 청구인(여, 43세)과 상대방(남, 47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남, 16세)과 사건본인2(남, 10세)를 두었으나 2011년 5월경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로는 상대방, 양육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본인의 부모님 집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지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고 사건본인2의 주소지가 변동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상대방의 동거녀가 사건본인2를 학대하여, 가해자는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고 사건본인2는 아동보호시설에서 1년 넘게 지내고 있던 것 때문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과 연락을 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려오기로 하고, 친권자 변경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4.)

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 이라 함)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 이라 함)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가. 2017. 10월분, 11월분 양육비 160만원 : 이 결정 확정 즉시 지급
 - 나. 2017. 12월부터 2018. 7월까지의 양육비 : 월 80만원 (사건본인 1인당 40만원)씩 매월 1일 지급
 - 다. 2017. 8월부터 각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씩 매월 1일에 지급
3. 청구인의 나머지 본심판 청구 및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혼인외자와의 부자관계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통해 밝힘

법률구조 2017-314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내용 : 원고(남, 63세)는 피고(여, 14세)의 친생부이다. 피고의 모는 1989년 1월경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인 조 OO과 혼인하였으나 1995년경부터 별거하다가 2005년 11월 이혼하였다. 피고의 모는 2000년경 원고를 만나 함께

생활하다가 2003년경 피고를 출산하였다. 피고의 모는 망 조 OO와의 혼인 중 피고를 출산하여 피고를 망 조 OO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으나, 동서의 결여로 인해 피고의 모가 망 조 OO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하였고, 유전자검사 결과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부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 2. 7.)

1. 피고와 망 조 OO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도박으로 가출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7-458

담당 : 양창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9세)와 피고(남, 69세)는 1975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도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였다. 2001년경 피고는 도박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출소 후 피고는 가출을 반복하다가 15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고령의 나이에 생사도 모르는 피고의 존재로 인하여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받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 3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4월 9일 / 23일)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등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8월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강의 일정 및 주제

Table with 3 columns: Date, Topic, and Instructor. Rows include dates from April to December with topics like '수치심: 나의 수치심은 어디에서 왔을까?' and '자존감: 나는 나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 일시 : 2018년 1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5월, 8월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강의 일정 및 주제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Topic. Rows include dates from April to December with topics like '인간 뇌의 특성',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and '실제 부부사례로 살펴 본 치료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2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

- 호주제 폐지 10년, 사라지지 않은 호주제의 잔재 '부성주의'

2018년 5월 11일(금) 오후 2시~5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좌장 : 김상용(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발표| ▷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대표 변호사)

권양희(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현소혜(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녀의 성(姓)결정에 대한 의식 조사연구 결과 발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